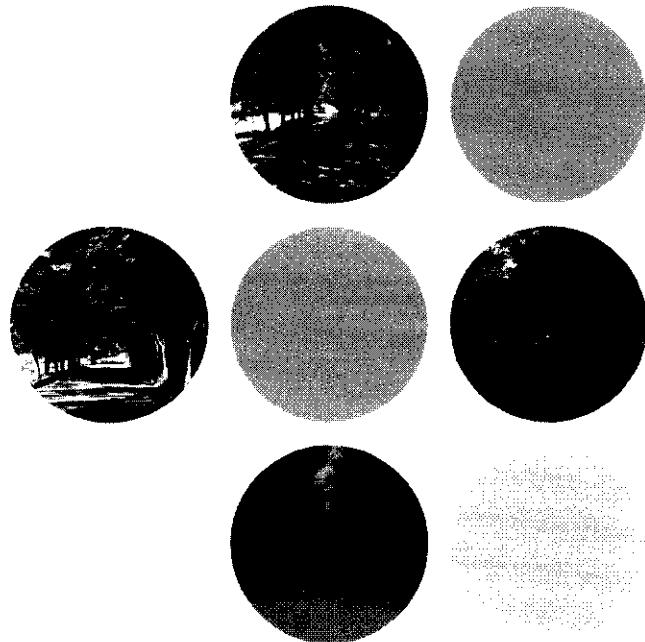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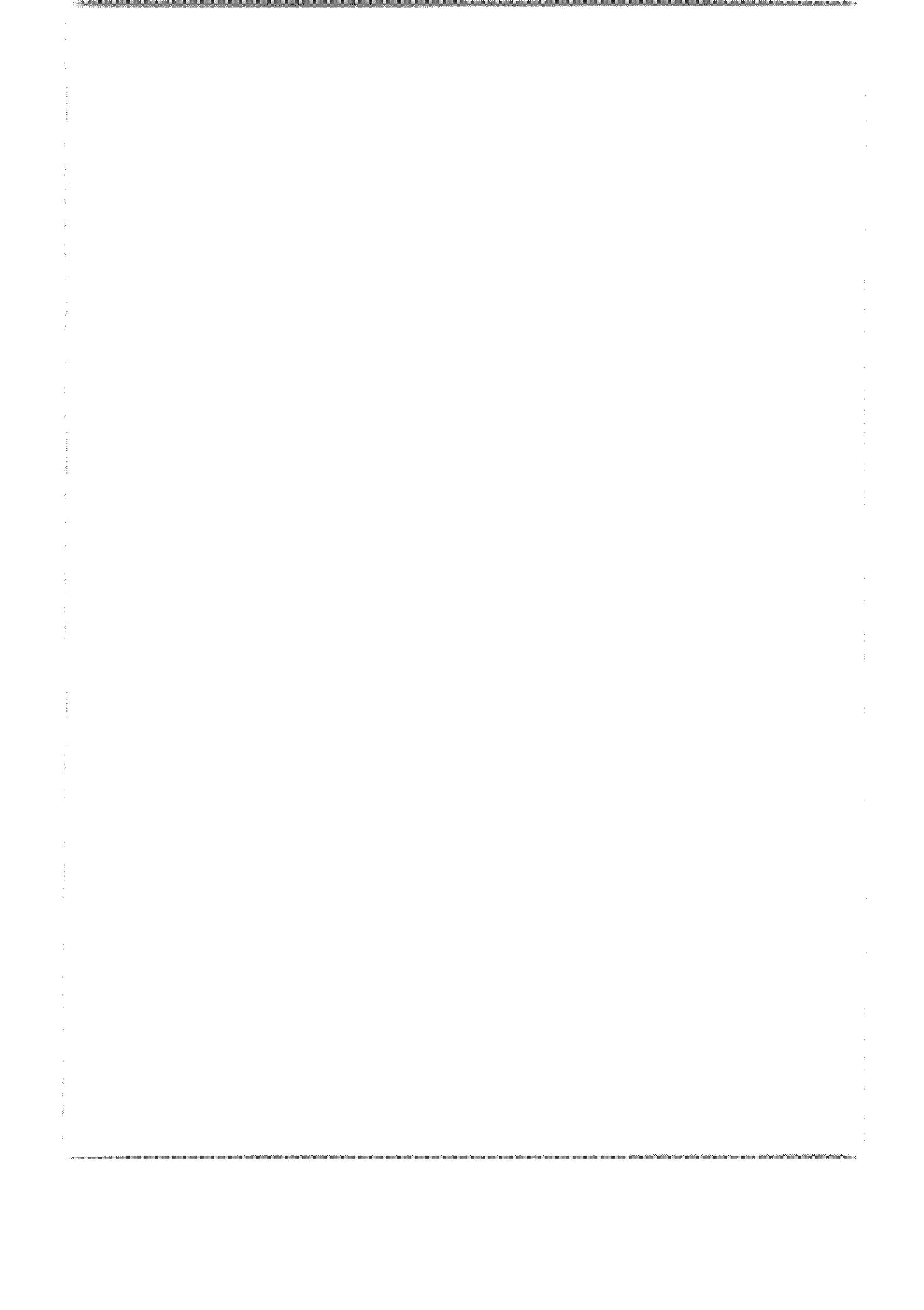


발행등록번호

2013
충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연구

송 수 진







충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연구

송 수 진

2013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충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송 수진(본 센터 연구원)

연구 지원 권수진(본 센터 위촉연구원)

2013

발 간 사



1990년대 여성운동은 제도권 내에서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제정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폭력이었으나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없었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분명하게 된 시점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이후,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감소하기 보다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결과로만 볼 때 아직도 '가정폭력'은 사회문제로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결혼이주여성과 여성장애인 등은 훨씬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에서는 올해 두 번째 연구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과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결혼 이주 여성과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충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충북에선 처음으로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관련기관 실무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가정폭력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충북의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 집행으로 연계되어 사회적 약자로서 아동과 여성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충북을 만드는데 쓰임이 되길 바랍니다.

2013. 7.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소장 유영경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충북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과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이주여성, 장애 여성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련기관 실무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가정폭력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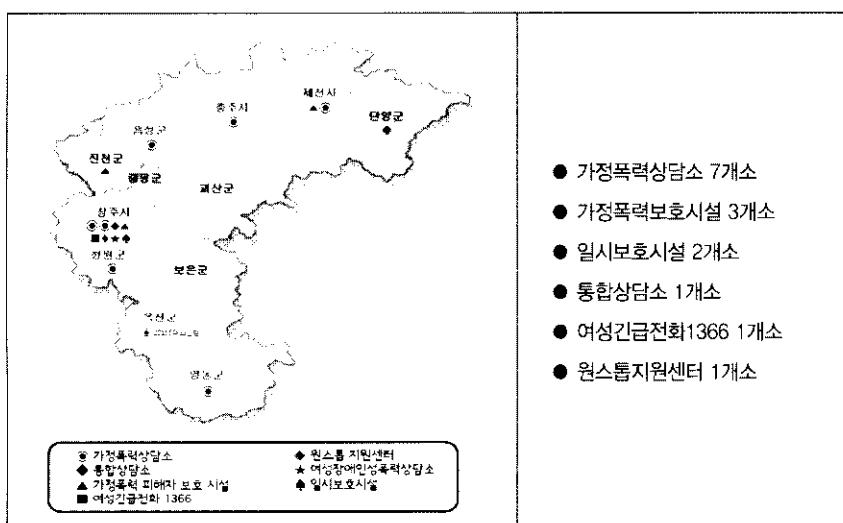
- 가정폭력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경찰청 및 검찰청의 자료 검토, 가정폭력 관련 법률, 정부 정책 등을 검토.
- 충북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법적 근거를 파악.
-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통해 가정폭력 상담과 프로그램 지원 현황 파악.
- 충북에 거주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폭력 경험, 기관 이용 만족도, 정책요구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법률에 관한 인지도와 가정폭력 관련 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 충북의 가정폭력피해자 효율적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 남부권(보은, 영동) :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보호시설 0 개소

(2) 대상별 현황

- 여성장애인 지원 기관 : 충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있으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은 별도로 설치 되어 있지 않음.
- 이주여성 지원 기관 : 가정폭력상담소는 없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별 1개소씩 분포되어 있으며 보호시설은 1개소가 있음.

〈그림 1〉 충북 가정폭력 관련 지원 기관 분포 현황



(1) 조사대상 및 방법

- 설문조사 대상 : 도내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연대, 수화통역센터 등 총 27개소를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자
- 조사기간 : 2013년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4주간

-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갖는 심리적 어려움으로는 ‘불안하고 우울하다’가 2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폭력이 다시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18.6%),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18.5%),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18.5%)가 거의 비슷하게 70%를 상회하며 나타남.
-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은 ‘경찰서(112, 지구대)’가 3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가족, 친구’ 24.9%, ‘상담소(여성폭력관련)’ 13.3%, ‘여성긴급전화 1366’ 12.9%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그냥 당하고 있다’는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36.1%,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7.7% 순으로 나타남. 또한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6.9%로 나타남.
-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당하고 있는 이유로는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기 때문인 경우(35.8%)와 무서워서(34.0%)가 많이 나타났으며 아 이들 때문인 경우도 11.3%로 나타남.
- 가정폭력 발생 당시 또는 이후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 40.8%, ‘없다’ 59.2%로 나타남.
- 가정폭력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배우자(가해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2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1.7%,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7.4%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취한 조치는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그냥 돌아갔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음. 시단위 · 군단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단위 지역에서는 44.9%, 군단위 지역에서는 53.8%로 군단위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짙은 것으로 나타남.
- 경찰신고 후 행위자의 폭력행동의 변화에 대하여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가 5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력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가 18.9%,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 15.8%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피해자가 상담소에서 받은 지원으로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호시설 연계'의 경우가 29.3%, '법률서비스' 22.4%, '의료서비스' 13.8%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쉼터)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 46.8%, '없다' 53.2%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동반한 경우가 55.0%로 동반하지 않은 경우 보다 많았음.
-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정폭력보호시설(쉼터)을 몰라서'가 2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1.8%, '쉼터에 가고 싶지 않아서' 16.9%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로로는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경우가 5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 18.3%, '친구, 친지 등' 10.1%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받은 지원으로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른 보호시설, 기관'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22.5%, '법률 · 의료서비스'가 각각 21.8%, 21.1%로 비슷하게 나타남.
-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는 57.5%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 42.5%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9.6%,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8.5%로 나타남.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으로는 'TV/라디오의 공익광고'가 6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10.7%,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9.0%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독립 지원'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 21.0%, '법률적 지원' 14.6%,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지원' 13.7% 순으로 나타남.

(5) 여성장애인 분야

- 여성장애인을 위한 통합상담소를 북부권과 남부권에 설치하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언어, 청각장애인의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화상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개선해야 함.

5. 충북 여성정책 분야

(1) 가정폭력 관련 시설 확대

- 충북에서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가 모두 부재한 지역은 단양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전천군, 옥천군 6개 지역임. 상담소가 부재한 지역에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통합해서 상담할 수 있는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확대하여 최소한 시 · 군별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가 1개소씩 배치되어 상담 접근성을 높여야 함. 또한 상담소 분포에 있어 이주여성 상담기능, 법률지원 상담기능을 포함한 상담소가 균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 ‘가족상담원제’ 부활과 기존 상담소에 ‘현장상담원’을 충원하여 주민센터 또는 여성회관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문화가족의 해체율이 증가하면서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 기관이 필요함. 즉,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가정폭력 발생 확률이 높으며, 체류, 국적취득, 국제적 이혼 등 복잡한 절차와 사안이 혼재되어 있음. 또한 통역이 항상 지원되어야 하며, 가족 상담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상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설치가 필요함.
-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일시보호시설’을 지역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북부권과 남부권에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충북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없지만 가정폭력 상담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일반 보호시설은 장애인의 경우 입소가 거부되는 경우

-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된 환경과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하며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소장, 상담원, 기타 실무자들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정기적 수퍼비전을 제공해야 함.

(3) 피해자 지원 체계화

-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개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1366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 의료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초기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함.
-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34.3%로 조사결과 나타나 경찰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였음.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 하라며 그냥 돌아갔다' 가 47.4%로 높게 나타나 경찰의 초기개입 개선과 관련해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상담소와의 파트너십이 효과적일 것으로 봄.
- 가정폭력피해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녀를 동반한 경우가 51.9%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시켜 접근금지 할 수 있도록 '긴급임시조치'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함.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감호위탁제'를 활용하거나 유치장에 일시적으로 격리,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4) 가정폭력 예방 지원 사업 재정비

- 학교 교육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성평등을 통합하여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교사에 대한 교육도 별도 추진이 필요함. 또한 전문기관 즉, 의료기관, 사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교육과 지역의 주민센터 통장, 자원봉사대, 군 단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함.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도내 관련기관(상담소 등)을 홍보하는 공동리플렛을 제작하여 각 기관에 홍보하고, 특히 여성장애인,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Contents

충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연구

● ●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 1) 연구 내용 / 5
 - 2) 연구 방법 / 6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8

● ● 제2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현황

1. 지원 배경 / 11
2.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및 정책 / 12
 - 1) 법적 근거 / 12
 - 2) 주요정책 및 계획 수립 / 14
3. 지원 기관 및 시설 현황 / 17
 - 1) 충북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황 / 17
 - 2) 권역별 현황 / 18
 - 3) 대상별 현황 / 19
4. 지원 기관 및 시설 평가 / 22
 - 1) 가정폭력상담소 / 23
 - 2) 가정폭력 보호시설 / 26

● ● 제3장 충북 가정폭력현황 및 지원사업

1. 충북 가정폭력 현황 / 33
 - 1) 가정폭력상담소 / 33
 -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43
 - 3)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 48
 - 4) 여성장애인 상담 / 54
 - 5) 충북 가정폭력 범죄현황 / 56
2. 충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 57
 - 1)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57
 - 2)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 / 58
 -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58

▶ 표목차

Tables contents

- 〈표 1-1〉 연구 흐름도 / 7
- 〈표 2-1〉 권역별 가정폭력 관련 기관 현황 / 18
- 〈표 2-2〉 충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 지원 인력 현황 / 20
- 〈표 2-3〉 상담소 주요 업무 / 21
- 〈표 2-4〉 상담소 유형별 평균 / 23
- 〈표 2-5〉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지역별 평균 / 24
- 〈표 2-6〉 가정폭력상담소 지역별 영역별 평균 / 25
- 〈표 2-7〉 가정폭력상담소 지역별 영역별 평균 / 26
- 〈표 2-8〉 전국 가정폭력 보호시설 유형별 평균 / 26
- 〈표 2-9〉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평균 / 27
- 〈표 2-10〉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시설환경 및 안전도 평균 / 28
- 〈표 2-11〉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평균 / 28
- 〈표 2-12〉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서비스 및 인권보호 평균 / 29
- 〈표 2-13〉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지역 사회 연계 평균 / 29
- 〈표 2-14〉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종사자 근무환경 평균 / 29
- 〈표 2-15〉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거주자 만족도 평균 / 30
- 〈표 3-1〉 가정폭력 상담소 현황(2006~2012년) / 33
- 〈표 3-2〉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현황(2006~2012년) / 34
- 〈표 3-3〉 가정폭력 상담실적 현황(2006~2008년) / 35
- 〈표 3-4〉 가정폭력 상담자 유형(2007, 2012) / 36
- 〈표 3-5〉 가정폭력 상담방법 / 37
- 〈표 3-6〉 가정폭력 상담내용 / 39
- 〈표 3-7〉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 / 41
- 〈표 3-8〉 가정폭력 행위자 유형 / 41
- 〈표 3-9〉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42
- 〈표 3-1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2012) / 43
- 〈표 3-1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2012) / 44
- 〈표 3-1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2012) / 44
- 〈표 3-1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시 동반한 아동(2012) / 45
- 〈표 3-1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경로(2012) / 45
- 〈표 3-1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기간(2012) / 46
- 〈표 3-1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직업별 현황(2012) / 46
- 〈표 3-1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퇴소시 현황(2012) / 47
- 〈표 3-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실적(2012) / 48
- 〈표 3-19〉 1366 운영실적 / 49
- 〈표 3-20〉 1366 상담의뢰인 유형(2012) / 49
- 〈표 3-21〉 1366 상담방법(2012) / 50
- 〈표 3-22〉 1366 상담 유형(2012) / 51

▶ 표목차

Tables contents

- 〈표 4-2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경로 / 84
- 〈표 4-22〉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지원 내용(중복응답) / 85
- 〈표 4-23〉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경험 / 86
- 〈표 4-24〉 가정폭력상담소 이용하지 않은 이유 / 86
- 〈표 4-25〉 가정폭력상담소 이용경로 / 87
- 〈표 4-26〉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 87
- 〈표 4-27〉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만족도 / 89
- 〈표 4-28〉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경험 / 89
- 〈표 4-29〉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하지 않은 이유 / 90
- 〈표 4-30〉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경로 / 90
- 〈표 4-31〉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 / 91
- 〈표 4-32〉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만족도 / 92
- 〈표 4-33〉 가정폭력 인지도 / 92
- 〈표 4-34〉 가정폭력특별법 인식도 / 93
- 〈표 4-35〉 가정폭력특별법 인식 경로 / 93
- 〈표 4-36〉 가정폭력특별법 인지 정도 / 94
- 〈표 4-37〉 가정폭력 방지 정책 / 94
- 〈표 4-38〉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방법 / 95
- 〈표 4-39〉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도 / 96
- 〈표 4-40〉 가정폭력 피해자 필요 지원 / 96
- 〈표 4-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이주여성) / 97
- 〈표 4-42〉 이주여성의 출신국적 현황 / 98
- 〈표 4-43〉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유형(중복응답) / 99
- 〈표 4-44〉 가정폭력 첫 피해 시기 및 행위자 / 99
- 〈표 4-45〉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유무 / 100
- 〈표 4-46〉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적 상태(중복응답) / 100
- 〈표 4-47〉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 요청 기관 / 101
- 〈표 4-48〉 가정폭력 발생 당시 피해자 대응 / 102
- 〈표 4-49〉 가정폭력 피해자 대응 이유(중복응답) / 102
- 〈표 4-50〉 경찰서 신고 경험 유무 / 103
- 〈표 4-51〉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 103
- 〈표 4-52〉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조치 / 104
- 〈표 4-53〉 경찰 신고 후 가정폭력 행위자 행동 변화 / 104
- 〈표 4-5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경험 / 105
- 〈표 4-55〉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105
- 〈표 4-5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경로 / 106
- 〈표 4-57〉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경험 / 106
- 〈표 4-58〉 가정폭력상담소 이용하지 않은 이유 / 107

▶ 그림목차

Figures contents

- 〈그림 2-1〉 충북 가정폭력 관련 지원 기관 분포 현황 / 17
- 〈그림 2-2〉 충북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기관 분포 현황 / 20
- 〈그림 3-1〉 상담소 개소수 및 가정폭력 상담실적 / 35
- 〈그림 3-2〉 가정폭력 상담자 유형(2012) / 37
- 〈그림 3-3〉 가정폭력 상담방법(2012) / 38
- 〈그림 3-4〉 가정폭력 상담내용(2012) / 40
- 〈그림 3-5〉 1366 상담유형(2012) / 51
- 〈그림 3-6〉 여성 장애인 상담유형(2012) / 55
- 〈그림 3-7〉 충북 가정폭력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 및 피해자 프로그램 지원 기관
분포 현황 / 62
- 〈그림 4-1〉 가정폭력 피해유형 / 73
- 〈그림 4-2〉 가정폭력 행위자 / 75
- 〈그림 4-3〉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유무 및 자녀수 / 76
- 〈그림 4-4〉 가정폭력 발생 도움 요청기관 / 77
- 〈그림 4-5〉 가정폭력 발생 피해자 대응 / 78
- 〈그림 4-6〉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조치 / 81
- 〈그림 4-7〉 경찰 신고 후 가정폭력 행위자 행동 변화 / 82
- 〈그림 4-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84
- 〈그림 4-9〉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 88
- 〈그림 4-10〉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경로 / 91
- 〈그림 4-11〉 충북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기관 분포 현황 / 130
- 〈그림 5-1〉 충북 가정폭력 상담소, 시설 추가설치안 / 144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범위 및 한계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여성운동의 맥락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시설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지원근거를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여성운동단체에서 앞장서기 시작했다. 1990년대 충북에서는 이러한 법률제정을 위해 여성단체와 여성연대가 같이 '가정폭력방지입법추진을 위한 청주연대'를 결성하면서 아내구타 사진전 및 거리 서명을 비롯해 입법시안 설명회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백경미외, 2012).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개입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7년 마침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충청북도여성발전3개년기본계획」,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작년 한해 충북의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총 13,028건으로 1개소당 평균 상담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실적은 총 7,501건으로 가정 폭력 상담이 내국인의 경우 48.5%, 이주여성의 경우는 74.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록 가정폭력상담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된 가정폭력 상담 실적만도 19.0%를 차지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북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도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존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지만, 가정 폭력피해자 실태 및 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는 실시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가정폭력 유형중의 대부분인 ‘배우자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여성과 여성장애인을 포함해 가정폭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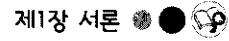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충북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과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이주여성,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전국단위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경찰청 및 검찰청의 자료를 검토하고,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가정폭력과 관련한 신설된 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충북의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를 통해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통해 가정폭력 상담과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가정폭력 현황과 지원체계, 서비스 요구도, 연계기관,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법률에 관한 인지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도내 27개소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3) 심층인터뷰 및 전문가 회의

심층인터뷰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위해 관련 기관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네트워크,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심층인터뷰는 4월 26일(1차), 5월 2일(2차), 전문가회의는 6월 19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회당 참가인원수는 6~8명, 1회당 2~3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참석자의 동의하에 기록자가 속기로 기록하여, 이 속기록을 심층인터뷰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1〉 연구 흐름도

단계	절차	주요 내용	시기
1 단계	문헌검토	- 상담소 현황 및 상담 실적 검토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검토	1월중
2 단계	연구계획수립	- 연구 방향, 방법, 연구 구성 내용 등	2월중
3 단계	설문조사 및 분석	- 피해자 지원 현황 파악 - 피해자 서비스 욕구 조사	4. 22 ~ 5. 24
		- 설문조사 결과 분석	5 ~ 6월중
4 단계	심층인터뷰 전문가회의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4. 26 5. 02 6. 19
5 단계	최종보고서 발간	- 정책 방향 제시 및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	6 ~ 7월중

제2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현황

1. 지원 배경
2.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및 정책
3. 지원기관 및 시설현황
4. 지원기관 및 시설 평가 결과



제2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체계현황

1. 지원 배경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가정내 폭력을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결국 여성의 종속과 남성의 지배를 강화하는 기재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인 의미에서의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 또는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의도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박선영외, 2007)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선포’와 ‘유엔 여성 10년(1976–1985)’ 선포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및 시설이 설립되었다.

초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여성 운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의 권리와 자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피해자 지원을 임파워먼트(Empowerment)로 접근하였다(신상숙, 2007)

그리고 한국사회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발전과정이 여성운동과 맥을 같이 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08).

여성연합은 1996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전국차원의 지역운동을 통해서 1997년 11월 가정폭력방지법이 통과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선진국의 경우처럼 한국에서도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단체들 간의 경쟁, 운동성의 약화, 기관 자율성의 약화로 나타났다(신상숙, 2007)



의미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따라서 동거하고 있지 않은 친형제자매 사이의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정폭력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신고는 피해자 이외에도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서는 신고의무 대상자로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 · 아동 · 장애인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구조대 · 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상담소,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였는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 ·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위하여 ①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홍보, ③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④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⑤가정폭력의 예방 ·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에 가정폭력의 예방 ·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을 정책과제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1년 5월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사건 초기 대응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²⁾은 ①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②가정 폭력 재발방지, ③ 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④ 가정폭력 근절 문화확산 등 4개 전략과제에 12개 대과제와 45개 세부과제로 되어 있다.

충북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충북여성발전기본계획(2002~2004)에서는 ‘여성폭력피해방지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성폭력상담소 확충 및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 여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를 세부사업으로 하였다.

제2차 충북여성발전기본계획(2005~2007)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추진과제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폭력피해여성 자활 및 자녀양육 지원, 가해자 상담 및 교정프로그램 지원, 여성폭력 예방 사업, 1366 One-Stop 보호 체계 확립을 세부사업으로 하였다.

제3차 충북여성발전기본계획(2008~2010)은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를 추진과제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여성장애인 성·가정폭력 방지 사업, 이주여성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 파악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성·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여성폭력방지협의회 재정비 및 실무분과 구성, 여성폭력예방 행사 및 홍보물 제작 캠페인 실시, 성·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성·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 확대, 가정폭력 피해 자녀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성·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1366 운영 지원을 세부사업으로 하였다.

제4차 충북여성발전기본계획(2011~2013)은 ‘여성폭력방지 및 인권강화’를 추진

2) 가정폭력 종합대책은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후 대응차원의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대상 및 유형의 다양화에 맞추어 피해자 가족통합 인권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가정폭력 관련 시설간의 기능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1,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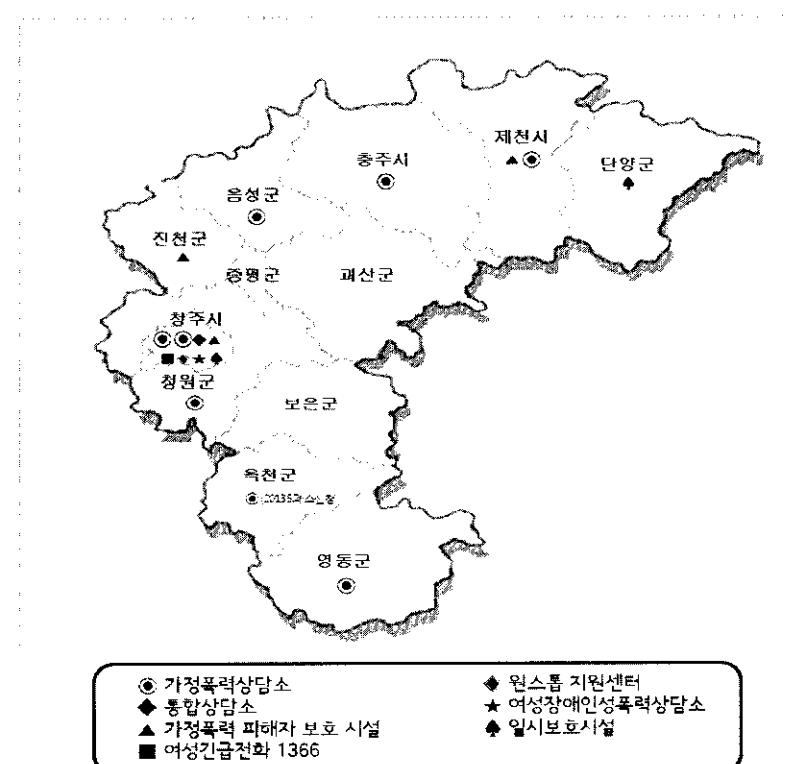


3. 지원 기관 및 시설 현황

1) 충북 가정폭력 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

충북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은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가정폭력상담소’ 7개소(전국의 3.5%), ‘가정폭력 보호시설’ 3개소, ‘통합상담소’ 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1개소, ‘여성학교폭력 원스탑(One-stop)지원센터’ 1개소가 있으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는 ‘충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있다(옥천가정폭력상담소는 2013년 5월 폐지).

〈그림 2-1〉 충북 가정폭력 관련 지원 기관 분포 현황



구분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통합 상담소	원스톱 지원센터	장애인 지원 상담소	1366
중부권	증평군	-	-	-	-	-
	음성군	1	-	-	-	-
	진천군	-	1	-	-	-
남부권	계	2	-	-	-	-
	보은군	-	-	-	-	-
	옥천군	1	-	-	-	-
	영동군	1	-	-	-	-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3) 대상별 현황

충북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중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충북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을 위한 별도의 가정폭력상담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별 1개소 씩 분포되어 있으며 보호시설은 1개소가 있다.

다문화 상담에 필요한 전문 통역 지원은 충북은 17명의 통역지원사가 10개 센터에 배치되어 담당하고 있다(2013년 1월을 기준). 하지만 전문 통역지원사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보다는 단순한 통역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별로 통역지원사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3〉 상담소 주요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근거, 참고
가정폭력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프로그램 -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 · 연구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통합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 - 폭력피해자 의료기관 등행 및 수시동행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법률구조 및 심리적 지원상담 - 보호시설 연계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프로그램 등 	청주YWCA 발간지
원스톱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원 : 심리 안정을 위한 피해 유형별 전문 상담 - 의료지원 : 응급치료, 산부인과 진료 및 치료, 후유증 극복을 위한 정신과 치료, 전문적 평가 및 진단, 법의학적 증거 채취 - 수사지원 : 여성조사관의 진술 녹화 등 과학적 수사와 사건직후의 증거수집으로 가해자 조기 점거 - 법률지원 : 법률지원단 소속 변화사의 법률 자문 - 여경경찰관, 전문상담사 24시간 근무 및 응급의료진 대기로 야간 진료 등 	홈페이지 참조 http://www.cboonestop.or.kr/



로는 가정폭력상담소 127개소, 성폭력상담소 88개소, 여성장애인 가정·성폭력상담소 18개소, 통합상담소 12개소로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 환산 전체 평균 86.48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82.08점, 성폭력상담소 84.50점, 장애인 가정·성폭력상담소 88.86점, 통합상담소 90.48점으로 통합상담소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4〉 상담소 유형별 평균

(단위 : 개소, 점)

시설유형	개소 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가정폭력상담소	127	82.08	42.19	100.00	12.14
성폭력상담소	88	84.50	38.13	98.75	12.37
장애인가정·성폭력 상담소	18	88.86	81.60	95.10	4.83
통합상담소	12	90.48	80.68	97.09	5.12
합계	245	86.48	38.13	100.00	11.80

* 자료 :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여성가족부(2010. 11)

'2010년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에서 충북의 가정폭력 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가정폭력상담소

2010년을 기준으로 도내 가정폭력상담소의 평가대상은 7개소였으며, 이들의 평균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8.17점으로, 전국 평균 82.08점보다 13.91점 낮았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하였으며, 울산을 제외하면 최하위권으로 낮은 점수이다. 또한 충북은 다른 지역보다 지역내 상담소 간의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최소점수 49.38점, 최대점수 88.44점으로 격차는 39.06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전체 평균이 하위권에 속하는 지역일수록 크게 나타나는 결과이며 운영비 지원 여부가 주요 변수인 것으로 예측된다.

성, 상담원의 전문성, 인력개발 및 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5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전국 21.52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충북은 평균 16.70점으로 10점대의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세 번째 ‘서비스 및 인권보호’의 평가영역은 전체 평가지표 중 배점의 비중이 60점 만점으로 가장 높다. 이에 다른 하위영역은 상담 및 상담원의 전문성과 관련한 프로그램 일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유관기관 지원연계 서비스, 전화상담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사례관리 총 5개 영역에 대한 평가로 16개 시·도의 전체 평균은 47.71점으로 다소 높은 점수였으나 충북은 평균 39.82점으로 낮은 점수대를 나타냈다.

특히 이 분야인 ‘서비스 및 인권보호’ 영역은 상담소간의 수준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최소점수 27.50점, 최대점수 53.75점으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2-6〉 가정폭력상담소 지역별 영역별 평균

(단위 : 개소, 점)

구분	개소수	시설환경 및 안전도(5점)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25점)				서비스 및 인권보호(60점)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전국	127	4.38	1.88	5.00	.65	21.52	10.63	25.00	3.54	47.71	21.25	60.00	7.67
충북	7	3.80	2.81	4.38	.64	16.70	10.63	20.63	4.43	39.82	27.50	53.75	11.05

* 자료 :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여성가족부(2010. 11)

네 번째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하위영역 자원봉사자 활용, 홍보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점은 5점 만점으로 충북은 평균 4.38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다섯 번째 ‘종사자 근무환경’ 영역은 종사자의 외부교육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휴가 및 평균 근속년수에 관해 평가하며, 배점은 5점 만점으로 충북은 평균 3.49점으로 전국 평균 점수보다 역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시설유형	개소 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성폭력보호시설	16	87.00	73.41	97.32	7.03
장애인 가정·성폭력 보호시설	3	93.89	90.16	97.97	3.92
아주여성보호시설	19	87.44	72.54	100.00	7.42
합계	97	88.21	62.51	100.00	8.12

* 자료 :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여성가족부(2010. 11)

'2010년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에서 충북의 가정폭력보호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가대상은 3개소였으며 이들의 평균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6.26 점으로, 전국 평균 84.50점보다 8.24점 낮았으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경북을 제외하면 최하위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표 2-9〉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평균

(단위 : 개소, 점)

순위	지역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1	인천	1	91.32	91.32	91.32	-
2	제주	2	90.96	87.27	94.65	5.22
3	대전	1	90.91	90.91	90.91	-
4	강원	5	88.88	82.77	93.63	4.26
5	서울	10	87.26	75.99	99.51	7.81
6	전남	3	86.80	80.86	90.99	5.29
7	경기	8	85.12	74.49	93.37	5.99
8	경남	6	84.53	62.51	96.58	12.18
9	부산	3	83.36	66.12	96.73	15.67
10	대구	2	82.67	78.21	87.12	6.30
11	광주	3	82.64	75.86	92.88	9.02
12	충남	5	81.69	65.41	91.51	10.85
13	전북	4	81.55	70.59	91.10	10.59



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개선책이 시급하다.

〈표 2-12〉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서비스 및 인권보호 평균

구분	개소수	서비스 및 인권보호 (50점)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국	59	41.82	29.69	50.00	5.04
충북	3	35.42	34.38	37.50	1.80

* 자료 :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여성가족부(2010. 11)

네 번째 ‘지역사회 연계’ 영역의 배점은 5점으로 전국 평균은 3.90점으로 충북은 평균 3.75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2-13〉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지역 사회 연계 평균

구분	개소수	지역사회연계 (5점)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국	59	3.90	1.25	5.00	1.27
충북	3	3.75	3.13	5.00	1.08

* 자료 :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여성가족부(2010. 11)

다섯 번째 ‘종사자 근무환경’ 영역의 배점은 5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 3.86점보다 약간 높은 충북 평균 3.96점으로 나타나 유일하게 전국 평균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다.

〈표 2-14〉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종사자 근무환경 평균

구분	개소수	종사자 근무 환경 (5점)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국	59	3.86	2.19	5.00	.79
충북	3	3.96	3.75	4.06	.18

* 자료 :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여성가족부(2010. 11)

충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연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제3장 충북 가정폭력현황 및 지원사업

1. 충북 가정폭력 현황

2. 충북 가정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제3장 충북 가정폭력현황 및 지원사업

1. 충북 가정폭력 현황

1) 가정폭력상담소

(1) 상담소 운영실적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는 2006년 372개소에서 2012년 228개소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충북의 가정폭력상담소 또한 2006년 16개소에서 2012년 8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상담소 개소수 감소율은 전국 평균이 39%인 반면 충북은 50%로 전국대비 11%p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상담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2004년 이후 가정폭력 상담소의 개소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2005년에 가정폭력 상담소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지만 2008년 이후로 시설 규모 및 설비 설치 등의 기준 강화와 운영비가 미지원 된 상담소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본다.

〈표 3-1〉 가정폭력 상담소 현황(2006~2012년)

(단위 : 개소)

구 분	2006	2012	감소율
전국	372	228	39%
충청북도	16	8	50%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2013.4)



〈표 3-3〉 가정폭력 상담실적 현황(2006~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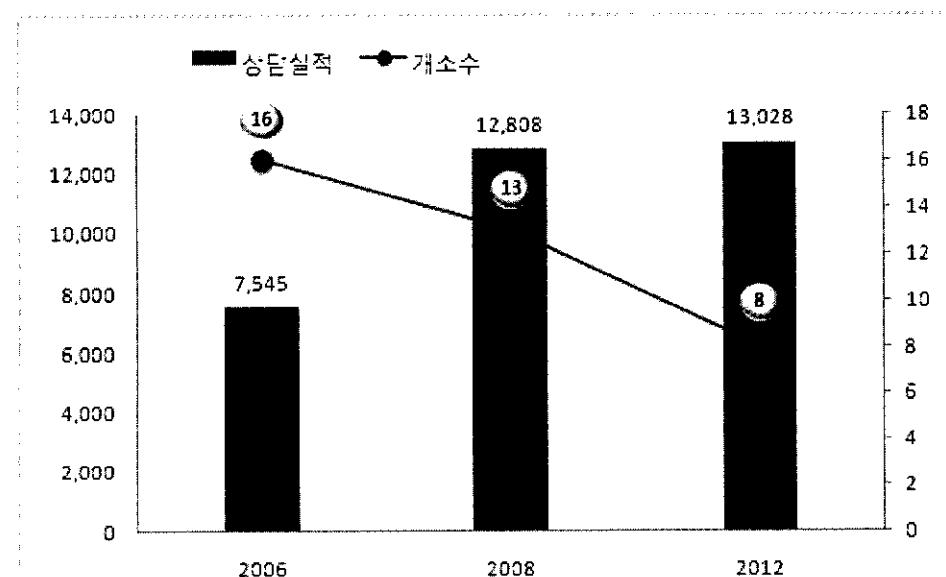
(단위 : 건, %)

구 분	2006		2008		201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가정 폭력 상담	2,521	33.4	4,131	32.3	4,645	35.7
기타 상담	5,024	66.6	8,677	67.7	8,383	64.3
계	7,545	100.0	12,808	100.0	13,0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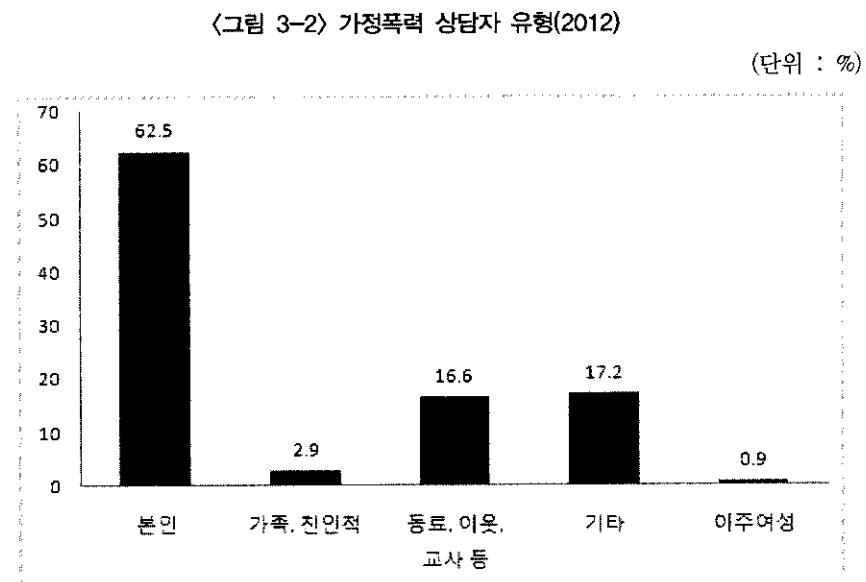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그림 3-1〉 상담소 개소수 및 가정폭력 상담실적

(단위 : 개소, 건)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상담방법은 2012년 기준으로 내방 상담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화상담 33.3%, 방문상담 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7년과 비교해 보면 내방상담이 6.8%p 증가한 것이며, 방문상담은 8.0%p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화상담은 33.3%로 2007년과 비교해 23.1% 감소하였으며, 전국 43.4% 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표 3-5〉 가정폭력 상담방법

(단위 : 건, %)

구 분	전 국		충청북도	
	2007	2012	2007	2012
계	295,825	272,580	13,897	13,028
	100.0	100.0	100.0	100.0
내방	110,459	111,473	3,905	4,551
	37.3	40.9	28.1	34.9
방문	20,887	28,238	1,413	2,366
	7.1	10.4	10.2	18.2

(3) 상담내용

충북은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상담건수가 13,028건으로 2007년과 비교해 869건이 감소하였다. 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72,580건으로 2007년 309,657건 보다 37,077건이 감소하였다.

상담내용별로는 가정폭력상담은 5년전과 비교해 감소하였으나 기타상담으로 이혼,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의 상담은 증가하였다.

〈표 3-6〉 가정폭력 상담내용

(단위 : 건, %)

구 분	전 국		충청북도	
	2007	2012	2007	2012
계	309,657	272,580	13,897	13,028
	100.0	100.0	100.0	100.0
가정폭력상담	135,386	118,178	5,487	4,645
	43.7	43.4	39.5	35.7
소계	174,271	154,402	8,410	8,383
	56.3	56.6	60.5	64.3
기타상담	이혼	36,495	28,916	1,671
		11.8	10.6	19.9
	부부갈등	41,311	31,833	1,891
		13.3	11.7	22.5
	가족문제	34,071	33,284	1,485
		11.0	12.2	17.7
	성폭력	3,400	6,016	498
		1.1	2.2	5.9
	성매매	666	278	36
		0.2	0.1	0.4
	성상담	5,769	3,459	650
		1.9	1.3	7.7
	중독	5,471	8,174	503
		1.8	3.0	6.0
	기타	47,088	42,442	1,676
		15.2	15.6	19.9
				14.4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2013.4)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표 3-7〉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

(단위 : 명, %)

구 분	전 국		충청북도	
	2007	2012	2007	2012
계	97,982	94,272	6,708	3,859
	100.0	100.0	100.0	100.0
19세 미만	3,751	4,747	707	55
	3.8	5.0	10.5	1.4
19세~60세 미만	81,825	75,766	5,264	3,103
	84.5	80.4	78.5	80.4
60세 이상	4,462	6,320	304	263
	4.5	6.7	4.5	6.8
미상	7,944	7,439	433	438
	8.1	7.9	6.5	11.4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2013. 4)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5) 가정폭력 행위자 유형

가정폭력의 행위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행위자가 배우자인 비율은 2012년 83.6%, 다음 직계 존속은 6.2%로 나타났다.

충북 역시 행위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로 2012년 91.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계존속, 기타, 과거 배우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가정폭력 행위자 유형

(단위 : 명, %)

구분	전국		충청북도	
	2007	2012	2007	2012
계	106,755	94,492	5,137	3,859
	100.0	100.0	100.0	100.0
배우자	86,326	78,998	3,405	3,528
	80.9	83.6	66.3	91.4

구 분	전국		충청북도	
	2007	2012	2007	2012
의료지원	3,486	1,736	413	51
	2.1	1.2	6.5	1.1
시설입소연계	3,472	3,411	110	38
	2.1	2.5	1.7	0.8
기타	9,640	19,253	371	1,696
	5.7	13.8	5.8	35.6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2013. 4)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 보호시설 운영실적

충북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3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청주시, 진천군, 제천시에 각 1개소가 지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총 63개소가 있으며 장애인시설은 2개소(서울, 광주)로 충북에는 장애인 시설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입소정원은 73명으로 개소 당 평균 입소 정원이 약 24명이며 상근종사자수는 평균 4명이다.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숙식,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24시간 운영되는 생활시설로서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할 수 밖에 없다.

〈표 3-1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2012)

구분	개소수	입소정원(명)	상 근 종 사 자 수(명)		
			계	상담원	비상근 자원봉사
전국	66	1,075	385	226	159
충청북도	3	73	12	11	1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2013. 4)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보호시설 입소시 동반 아동은 총 126명으로 연령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인 7~12세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유아기인 3~6세가 29%를 차지하였다. 중 고등학생인 13~18세가 18%, 3세 미만도 13%로 전국과 비슷하였다.

〈표 3-1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시 동반한 아동(2012)

(단위 : 명)

연도	아동동반 피해자수	동반아동 연령별 현황					
		계	3세미만	3세이상 ~6세	7세이상 ~12세	13세이상 ~18세	19세이상
전국	937	1,585	268	499	509	259	50
		100	17	32	32	16	3
충청북도	43	126	17	36	45	27	1
		100	13	29	36	21	1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2013.4)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보호시설로 입소한 비율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도내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보호시설로 입소한 비율이 20%, 경찰 11%, 사회단체(복지시설) 5%, 성폭력상담소 3%, 본인 2%, 일반행정기관 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경로(2012)

(단위 : 건)

연도	계	본인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일반 행정 기관	경찰	사회단체 (복지시설)	학교 교사	병원	1366	기타
전국	2,518	128	653	43	45	407	135	5	18	959	125
	100	5	26	2	2	16	5	0	1	38	5
충청북도	134	3	27	4	1	15	7	0	0	69	8
	100	2	20	3	1	11	5	0	0	51	6



보호시설 입소자의 퇴소시를 기준으로 혼인관계와 거주상황을 살펴보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53%, 별거 18%, 이혼 12%, 이혼소송중 11%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50% 가까이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거주상황을 살펴보면 남편과 동거하는 경우 47%, 타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10%, 독립하는 경우 17%, 아는 사람집에 거주하는 경우 12%로 나타났다. 이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거 또는 이혼소송중인 경우 스스로 독립하거나 타시설 입소를 원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3-1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퇴소시 현황(2012)

(단위 : 명, %)

연도	혼인관계						거주상황					
	계	결혼 관계 지속	별거	이혼	이혼 소송중	기타	계	남편과 동거	타 시설	재 입 소	아는 사람 집 거주	독립
전국	2,470	1,084	456	282	334	314	2,470	1,019	218	38	382	567
	100	44	19	11	14	13	100	41	9	2	16	23
충청 북도	133	70	24	16	14	9	133	62	13	1	16	23
	100	53	18	12	11	7	100	47	10	1	12	17

* 동반아동을 제외한 퇴소자 기준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2013.4)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는 심리·정서적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자립지원, 동반아동 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다. 충북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적 지원 17%, 수사·법적지원 6% 순이다. 하지만 전국과 비교해 동반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1366 운영실적

(단위 : 개소, 명, 건)

구 분	전 국		충청북도	
	2011	2012	2011	2012
시설 현황	위탁	14	15	—
	직영	3	3	1
종사자 수	상근직	192	211	11
상담건수	총계	191,050	206,972	6,789
				7,501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2013.4)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2) 상담의뢰인

충북의 1366센터에서는 본인이 상담을 의뢰 하는 경우가 4,541건으로 전체 64.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관련기관 27.1%, 가족으로 부모 2.3%, 형제자매 1.5%, 자녀 1.1%, 이웃 1.1%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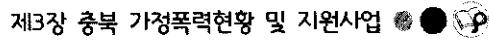
〈표 3-20〉 1366 상담의뢰인 유형(2012)

(단위 : 건, %)

구 분	총계	내국인										외국인
		본인	관련 기관	부모	자녀	이웃	형제 자매	친구	친인척	가해자	배우자	
건 수	7,501	4,541	1,911	165	79	79	105	45	39	57	26	15
비 율	100.0	64.3	27.1	2.3	1.1	1.1	1.5	0.6	0.6	0.8	0.4	0.2
												100.0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2013.4)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표 3-22〉 1366 상담 유형(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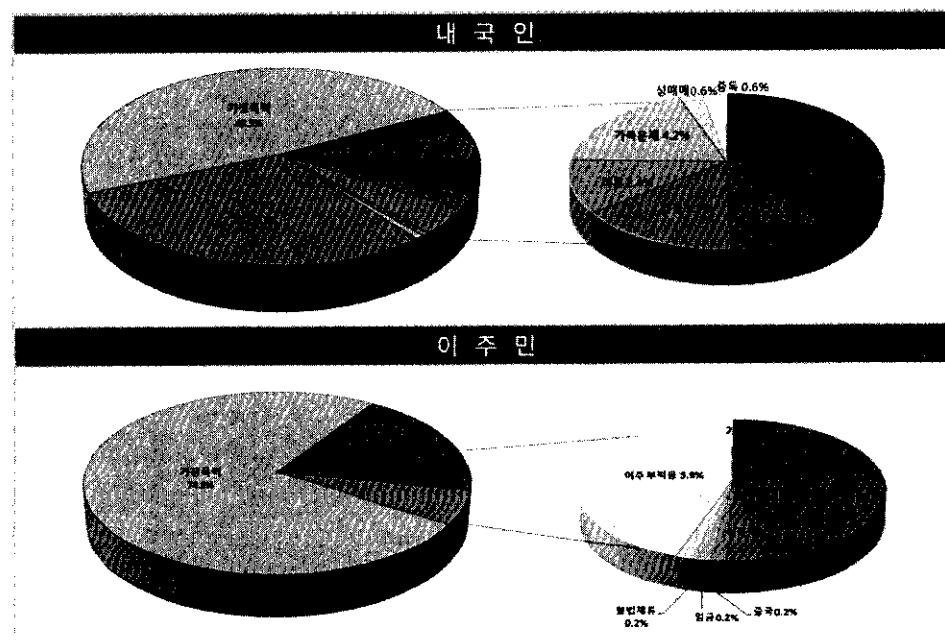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계(%)	가정 폭력	부부 갈등	성폭력	성상담	법률	이혼	가족 문제	성매매	중독	기타
내국인	7,062	3,425	272	340	155	235	166	299	41	44	2,085
	100.0	48.5	3.9	4.8	2.2	3.3	2.4	4.2	0.6	0.6	29.5

구 분	계	가정 폭력	이주 부적응	부부 갈등	가족 문제	이혼	법률	성폭력	출국	임금	불법 제류
이주민	439	329	26	52	3	10	14	2	1	1	1
	100	74.9	5.9	11.9	0.7	2.3	3.2	0.5	0.2	0.2	0.2

* 자료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12년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사업보고서

〈그림 3-5〉 1366 상담유형(2012)



* 자료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12년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사업보고서

(5) 상담조치 결과 현황

상담조치의 결과에서 내국인의 경우 전체 8,851건중 52.6%가 기관연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상담 19.8%, 청주 YWCA여성종합상담소 등 5개 상담소와 대



〈표 3-24〉 1366 관련기관 연계 조치(2012)

(단위 : 건, %)

구 분	계	전문상담 기관	보호시설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기타
건 수	6,220	2,904	893	940	445	673	365
	비 율	100.0	46.7	14.4	15.1	7.1	10.8

* 자료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12년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사업보고서

(7) 상담자 피해 유형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이주민 모두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내국인 85.1%, 이주민 82.4%),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주민의 경우 내국인과는 다르게 성적학대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표 3-25〉 1366 피해 유형별(2012)

(단위 : 건, %)

구 분	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기타
내국인	3,425	2,913	399	79	32	2
	100.0	85.1	11.6	2.3	0.9	0.1
이주민	329	271	45	1	12	0
	100.0	82.4	13.7	0.3	3.6	0.0

* 자료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12년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사업보고서

(8) 가정폭력행위자 유형

충북의 1366센터 가정폭력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외국인 모두 ‘배우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의 경우 친부모 4.1%, 전배우자 2.0%순였지만, 이주민의 경우 시부모(시댁식구) 9.4%로 나타난 내국인과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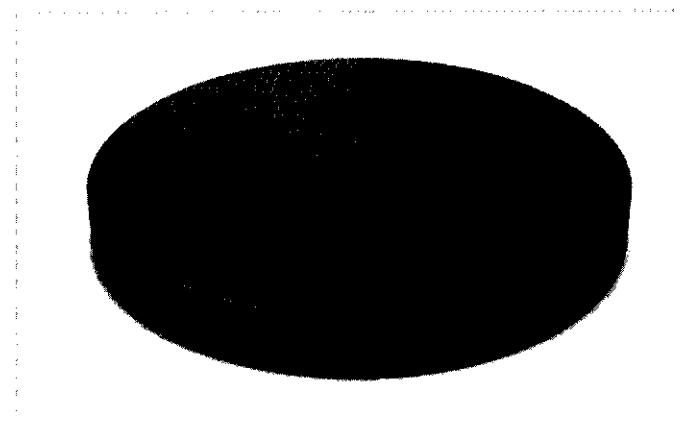
〈표 3-28〉 여성장애인 상담 유형(2012)

(단위 : 건, %)

구 분	계(%)	성폭력 상담	가정 폭력	성매매	성상담	가족 문제
건 수	1,149	850	199	0	0	0
점유율	100.0	81.0	19.0	0	0	0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기타건수 100건 제외

〈그림 3-6〉 여성 장애인 상담유형(2012)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

(2) 상담방법

충북의 여성장애인 상담방법으로는 전화를 통한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화상담은 61.5%, 방문 26.2%, 내방 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서 가정폭력특례법으로 사건화된 건수는 〈표 3-31〉에서와 같이 2011년 총 12건으로, 검거건수가 2건(구약식 2건), 가정보호송치 2건, 기소유예 2건, 혐의 없음 1건, 공소권 없음이 5건으로 나타났다.

〈표 3-31〉 충북 가정폭력특례법상 범죄 검거조치 현황

계	검거건수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 매매 보호 송치	불기소					기소 증지	참고 인 증지	공소 보류				
	구공판			구 약 식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 권 없음								
	소개	구속	불 구 속																
12	2	-	-	2	-	2	-	8	2	1	-	5	-	-	-				

* 자료 : 충청북도지방검찰청 범죄통계분석(2011)

2. 충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1)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충북 가정폭력상담소 8개소 중 4개소만 상담소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 통합상담소 1개소), 나머지 4개소는 도비 및 군비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3년 5월부로 옥천가정폭력상담소가 폐지되어 현재 7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표 3-32〉 충청북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2012)

(단위 : 백만원)

구분	시설수	상담실적	사업비
가정폭력피해상담소	8개소	11,504	292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재구성(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해당된다.

〈표 3-35〉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실적(2012)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추진실적		사업비	비고
	인원	건수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	427	698	20	
가정폭력피해자생계비	25		9	생계비 및 아동교육지원비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참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곳은 5개 지역(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의 5개소에서 신체적 외상 및 정신과 치료비,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진단서 발급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곳은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자로 3개 지역(청주, 제천, 진천)의 3개소에서 생계비와 아동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4)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고 있다. 운영기관별로 자립도우미 1인을 배치하여 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11호 주택에 18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2. 12월 기준)

〈표 3-37〉 2013 여성폭력 피해자 사례관리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수행기관	수혜대상	사업비(도비)
솔루션위원회운영	'13.1~12	충북여성연대	여성(아동)폭력피해자	10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참고

6)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 교정·치료지원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 성행 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별, 집단상담, 가족상담, 부부캠프 등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대상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처분자,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기타 상담소의 경찰 등 유관기관 의뢰, 상담과정에서 전유한 자로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자이다.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6개 지역(청주, 제천, 충주, 음성, 옥천, 영동)의 7개소에서 진행하였다. 현재는 옥천을 제외한 6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표 3-38〉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실적(2012)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시설수	추진실적		사업비
		인원	건수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 교정치료	7개소	135	231	79

* 자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행정자료 참고

〈표 3-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실적(2012)

(단위 : 건)

구분	계	이용자				상담주제				
		이주 여성	배우자	자녀	기타	부부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기타
계	2,614	1,773	493	33	315	977	117	230	236	1,054
청주	1058	761	115	7	175	330	32	82	80	534
충주	147	83	54	2	8	82	5	12	5	43
제천	355	292	38	18	7	93	20	35	20	187
청원	195	123	51	1	20	77	11	17	47	43
보은	41	21	15	0	5	16	6	5	2	12
옥천	148	71	51	0	26	46	5	25	19	53
영동	116	101	8	0	7	30	8	7	30	41
증평	77	64	10	0	3	34	6	4	4	29
진천	75	38	22	1	14	29	7	8	8	23
괴산	58	27	22	0	9	13	1	2	5	37
음성	334	185	105	4	40	225	16	32	15	46
단양	10	7	2	0	1	2	0	1	1	6

8) 아동 · 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협의회

여성과 아동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연계를 통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 · 여성 안전 지역연대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은 「여성폭력방지협의회」에서 2008년 4월 「아동 · 여성보호지역연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아동 · 여성폭력방지지역연대협의회로 명칭에 혼란이 있었지만 다시 2012년 「아동 · 여성 안전 지역연대운영협의회」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아동 ·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 의료, 법률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2회(상 · 하반기) 회의가 개최되며 아동 · 청소년 · 여성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 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피해자 구조 지원 및 사례 관리 등의 활동을 한다.

제4장 가정폭력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3. 심층인터뷰 결과

제4장 가정폭력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는 도내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장애인연대, 수화통역센터 등 총 27개소를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아주여성, 장애여성을 포함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 233명이며,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편, 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300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233부(회수율 78%)였다.

본 장에서는 전체 설문조사 결과 이외에도 아주여성과 장애여성의 설문조사 결과를 별도로 분석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1〉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인원

(단위 : 개소, 명)

구분	기관수	조사인원	퍼센트
상담소	8	86	36.9
쉼터(보호시설)	3	82	35.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38	16.3
장애인지원시설	2	5	2.1
기타	2	21	9.5
합계	27	233	100.0

구 분	내 용
가정폭력 인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인지 정도 * 가정폭력특례법 인지 정도
서비스 요구도	*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정책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자에 가장 필요한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주관식)

2.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1)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결과(전체)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은 〈표 4-3〉과 같다. 지역적으로는 ‘청주시’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제천시’가 1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를 성별로 살펴 보면 ‘여성’이 97.8%, ‘남성’ 2.1%로 대부분 여성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표 4-3〉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지역	청주시	99
	충주시	17
	제천시	35
	청원군	18
	보은군	8
	진천군	22
	옥천군	7
	괴산군	4
	증평군	6

구 분		빈도	퍼센트
결혼상태	동거	1	0.4
	비혼	11	4.7
	무응답, 기타	27	11.6
	합계	233	100.0
장애여부	장애없음	197	84.5
	장애있음	33	14.2
	무응답	3	1.3
	합계	233	100.0
출신국	내국인	176	75.5
	이주여성	54	23.2
	무응답	3	1.3
	합계	233	100.0

조사 대상의 결혼기간은 ‘10~20년미만’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년 이상’ 21.5%, ‘5~10년 미만’이 2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경우는 ‘5~10년 미만’이 37.0%, 장애여성의 경우 ‘10~20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표 4-5〉 가정폭력피해자 결혼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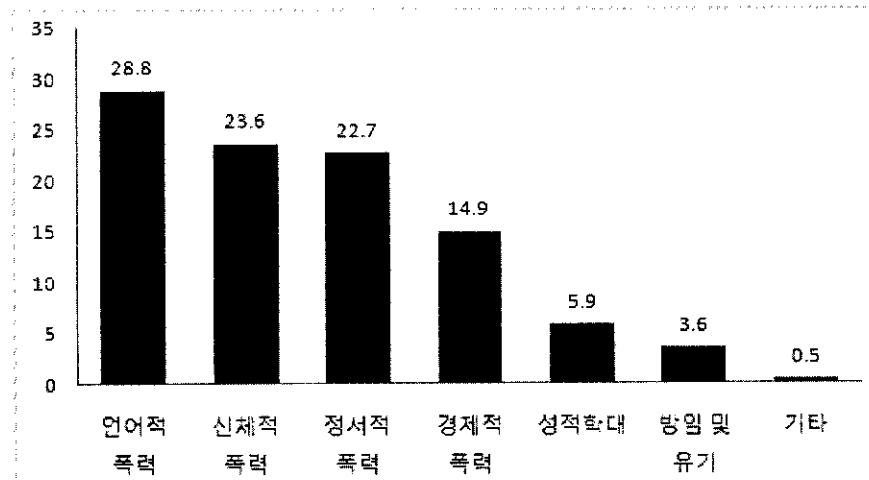
(단위 : 명, %)

결혼기간		빈도	퍼센트
전체	1년 미만	3	1.3
	1년~5년미만	31	13.3
	5년~10년미만	48	20.6
	10년~20년미만	75	32.2
	20년 이상	50	21.5
	무응답	26	11.2
	합계	233	100.0
이주여성	1년 미만	2	3.7
	1년~5년미만	18	33.3
	5년~10년미만	20	37.0
	10년~20년미만	9	16.7
	20년 이상	2	3.7



〈그림 4-1〉 가정폭력 피해유형

(단위 : %)



(3) 가정폭력 첫 피해 시기 및 행위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음 폭력을 당한 시기는 ‘20대’ 일때 40.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일 때 30.5%, ‘40대’ 일 때 12.0%순으로 나타났으며 ‘10대’와 ‘10대 이하’ 일때도 15.4%로 미성년자일 때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처음으로 가정폭력을 가한 행위자는 ‘배우자’가 70.0%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도 17.6%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부모’ 4.7%, ‘어머니’ 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가정폭력 첫 피해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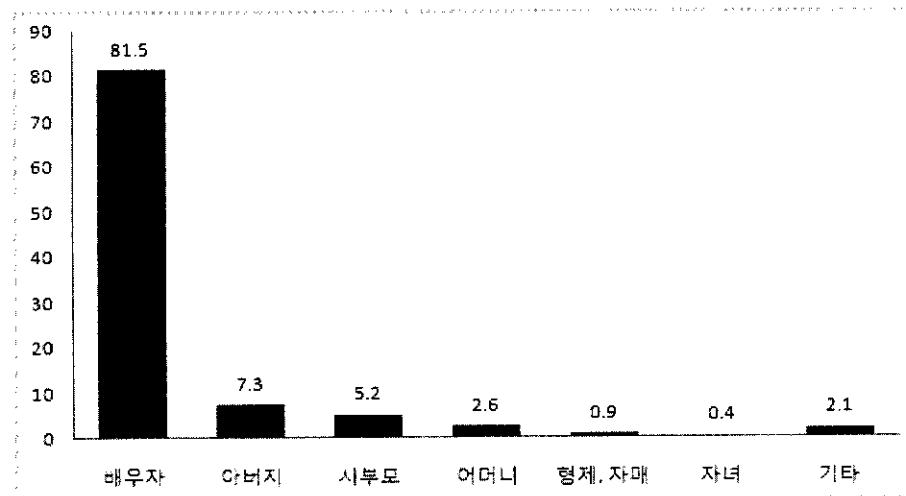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번호	퍼센트
10대이하	14	6.0
10대	22	9.4
20대	94	40.3
30대	71	30.5
40대	28	12.0
50대	4	1.7
합계	233	100.0



〈그림 4-2〉 가정폭력 행위자

(단위 : %)



(5)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유무 및 자녀수

설문조사에 응답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85.4%가 자녀가 있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폭력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폭력상황에 노출되는 등 간접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10〉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유무 및 자녀수

(단위 : 명, %)

구 분		반도	퍼센트
자녀유무	있다	199	85.4
	없다	34	14.6
	합계	233	100.0
자녀수	1	49	24.6
	2	102	51.3
	3	36	18.1
	4	6	3.0
	5	5	2.5
	6	1	0.5
	합계	199	100.0

(7) 가정폭력 발생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기관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은 '경찰서(112, 지구대)'가 3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가족, 친구' 24.9%, '상담소(여성폭력관련)' 13.3%, '여성긴급전화 1366' 12.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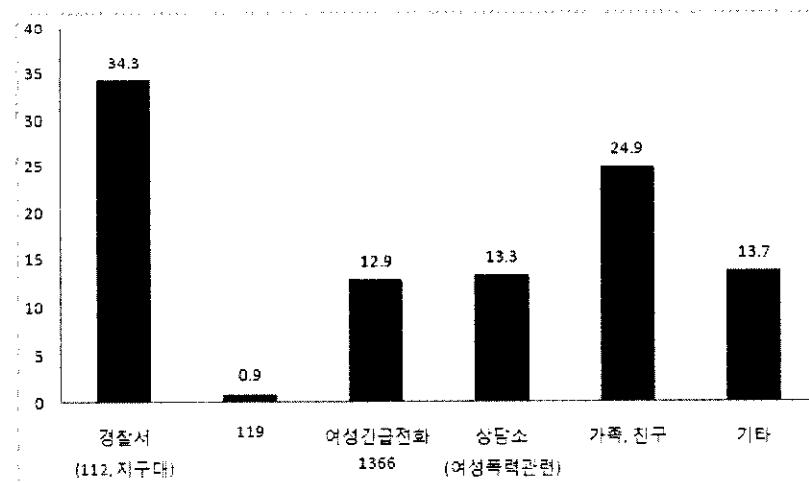
〈표 4-12〉 가정폭력 발생 도움 요청 기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경찰서(112, 지구대)	80	34.3
119	2	0.9
여성긴급전화 1366	30	12.9
상담소(여성폭력 관련)	31	13.3
가족, 친구	58	24.9
기타	32	13.7
합계	233	100.0

〈그림 4-4〉 가정폭력 발생 도움 요청기관

(단위 : %)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당하고 있는 이유로는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기 때문인 경우(35.8%)와 무서워서(34.0%)가 많이 나타났으며 아이들 때문인 경우도 11.3%로 나타났다.

〈표 4-14〉 가정폭력 발생 피해자 대응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서워서	36	34.0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38	35.8
내자 잘못한 것이므로	1	0.9
배우자이기 때문에	2	1.9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10	9.4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3	2.8
아이들 때문에	12	11.3
기타	4	3.8
합계	106	100.0

(9) 경찰서 신고 경험

가정폭력 발생 당시 또는 이후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 40.8%, '없다' 59.2%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배우자(가해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2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1.7%,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경찰서 신고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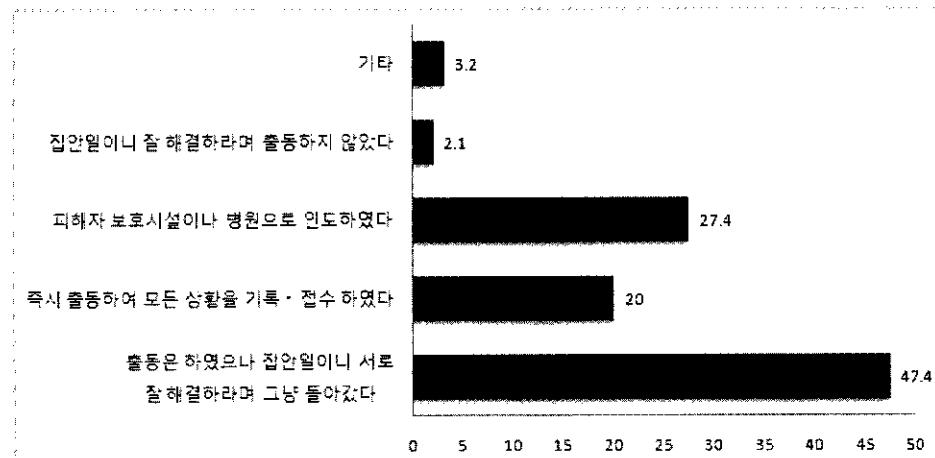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95	40.8
없다	138	59.2
합계	233	100.0

구 분	시단위 지역	군단위 지역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그냥 돌아갔다	31	44.9	14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 접수 하였다	15	21.7	4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인도하였다	19	27.5	7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았다	2	2.9	0
기타	2	2.9	1
합계	69	100.0	26
			100.0

〈그림 4-6〉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조치

(단위 : %)



(11) 경찰 신고 후 가정폭력 행위자 행동 변화

경찰신고 후 행위자의 폭력행동의 변화에 대하여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가 5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력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가 18.9%,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 15.8%로 나타났다.

경찰신고 이후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이 이전과 달라진게 없거나 폭력이 이전보다 늘은 경우도 15.8% 나타난 점을 볼 때,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한 것에 대해 행위자의 보복행동으로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9〉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78	33.5
없다	155	66.5
합계	233	100.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 5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4.2%,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	81	52.3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2	14.2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6	10.3
부부(가족) 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12	7.7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1	0.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3	8.4
기타	10	6.5
합계	155	100.0

(1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지원 내용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내용으로는 ‘긴급보호 시설 안내’ 3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상담기관 연결’ 14.4%, ‘긴급현장 출동 및 이송’, ‘법률기관 연결’이 각각 12.3%순으로 나타났다.

〈표 4-22〉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지원 내용(중복응답)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긴급보호 시설 안내	55	37.7
전문상담기관 연결	21	14.4
긴급현장 출동 및 이송	18	12.3
법률기관 연결	18	12.3
경찰 연결	14	9.6
의료기관 연결	14	9.6
기타	6	4.1
합계	146	100.0

(15)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경험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한 적이 ‘있다’ 37.3%, 이용한적 ‘없다’ 62.7%로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한 횟수로는 ‘1회’ 2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회’ 20.7%, ‘3회’ 18.4% 순으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도 많은 비율을 차지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16)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경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통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 친지 등’ 18.4%, ‘경찰 안내’ 17.2%,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5〉 가정폭력상담소 이용경로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26	29.9
친구, 친지 등	16	18.4
경찰 안내	15	17.2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9	10.3
매스컴	7	8.0
인터넷	5	5.7
광고문(길거리, 버스, 전철 등)	4	4.6
기타	5	5.7
합계	87	100.0

(17)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내용

가정폭력피해자가 상담소에서 받은 지원으로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호시설 연계’의 경우가 29.3%, ‘법률서비스’ 22.4%, ‘의료서비스’ 1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6〉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심리적 정서적 지원	55	31.6
보호시설 연계	51	29.3

〈표 4-27〉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되었다	49	56.3
도움이 된 편이다	31	35.6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6	6.9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1.1
합계	87	100.0

(19)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경험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쉼터)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 46.8%, ‘없다’ 53.2%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동반한 경우가 55.0%로 동반하지 않은 경우 45.0%로 보다 많았다.

〈표 4-28〉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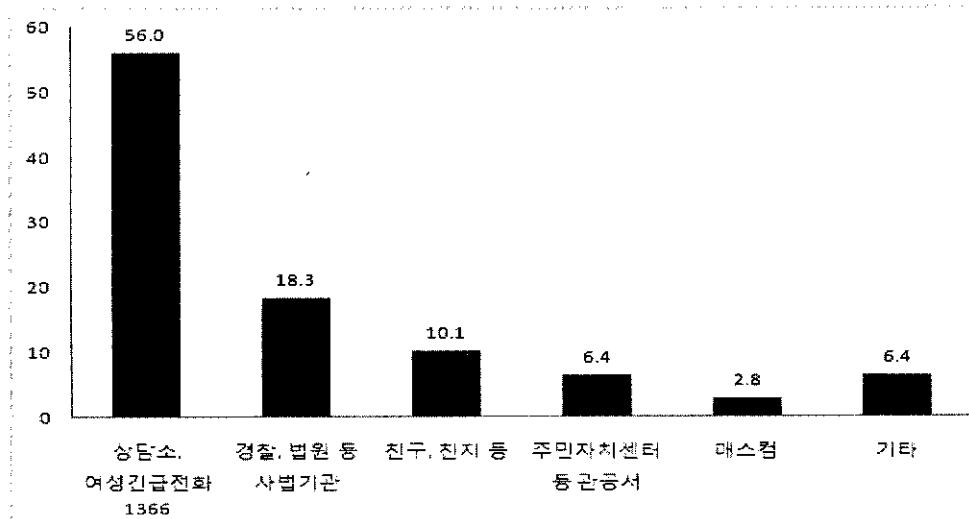
구 분	빈도	퍼센트
이용경험	있다	109
	없다	124
	합계	233
자녀동반	예	60
	아니오	49
	합계	109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정폭력보호시설(쉼터)’을 몰라서 2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1.8%, ‘쉼터에 가고 싶지 않아서’ 16.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경로

(단위 : %)



(21)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받은 지원으로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른 보호시설, 기관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22.5%, 법률·의료서비스가 각각 21.8%, 21.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31〉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

(단위 : 명, %)

구 분	번호	퍼센트
심리적 정서적 지원	89	32.4
법률서비스	60	21.8
의료기관 연계	58	21.1
보호시설(쉼터) 연계	62	22.5
기타	6	2.2
합계	275	100.0

(24) 가정폭력특별법 인식정도와 인식경로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는 57.5%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 4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경로는 'TV/라디오의 공익광고'를 통한 경우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소식지' 23.9%,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1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4〉 가정폭력특별법 인식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안 다	134	57.5
모른다	99	42.5
합계	233	100.0

〈표 4-35〉 가정폭력특별법 인식 경로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TV/라디오의 공익광고	47	35.1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32	23.9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18	13.4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4	10.4
학교/사회교육기관	9	6.7
신문/잡지	5	3.7
반상회보/구청소식지	1	0.7
기타	8	6.0
합계	134	100

(25) 가정폭력특별법 인지 정도

가정폭력특별법에 나온 가정폭력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인식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27)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방법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으로는 ‘TV/라디오의 공익광고’가 6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10.7%,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8〉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방법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TV/라디오의 공익광고	151	64.8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25	10.7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21	9.0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14	6.0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11	4.7
버스/지하철 광고	4	1.7
신문/잡지	2	0.9
반상회보/구청소식지	2	0.9
기타	3	1.3
합계	233	100.0

(28)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도

가정폭력 관련 기관으로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ONE-STOP지원센터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과 피해자의 아동 취학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조사 대상자 중 이주여성의 일반적 현황은 <표4-41>과 같다. 연령은 ‘20대’ 35.2%, ‘30대’ 33.3%, ‘40대’가 24.1%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중졸’이 29.6%, ‘대졸’ 29.6%, ‘고졸’ 22.2%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초혼’이 77.8%, ‘재혼’ 16.7%순이며, 이용 기관 시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8.1%, ‘쉼터(보호시설)’ 31.5%, 취업중인 여성이 55.6%로 나타났다.

<표 4-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이주여성)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연령	20대	19	35.2
	30대	18	33.3
	40대	13	24.1
	무응답	4	7.4
	합계	54	100.0
교육수준	초졸	9	16.7
	중졸	16	29.6
	고졸	12	22.2
	대졸	16	29.6
	대학원졸이상	1	1.9
결혼상태	합계	54	100.0
	초혼	42	77.8
	재혼	9	16.7
	기타	3	5.6
	합계	54	100.0
이용기관,시설	상담소	9	16.7
	쉼터(보호시설)	17	3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48.1
	기타	2	3.7
	합계	54	100.0



〈표 4-43〉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유형(종복응답)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언어적 폭력	40	30.5
신체적 폭력	29	22.1
정서적 폭력	26	19.8
경제적 폭력	20	15.3
성적학대	8	6.1
방임 및 유기	6	4.6
기타	2	1.5
합계	131	100.0

(3) 가정폭력 첫 피해 시기 및 행위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음 폭력을 당한 시기는 ‘20대’ 일때 46.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일 때 33.3%순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가정폭력을 가한 행위자는 ‘배우자’가 8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부모’ 13.0%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4〉 가정폭력 첫 피해 시기 및 행위자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첫 피해시기	10대이하	2
	10대	4
	20대	25
	30대	18
	40대	4
	50대	1
	합계	54
첫 가정폭력행위자	배우자	44
	시부모	7
	아버지	1

구 분	빈도	퍼센트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8	7.1
죽고 싶다는 생각	13	11.5
기타	1	0.9
합계	113	100.0

(6) 가정폭력 발생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기관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은 '경찰서(112, 지구대)'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친구'도 25.9%로 높게 나타나 이주여성의 경우 가족,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4-47〉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 요청 기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경찰(112, 지구대)	16	29.6
여성긴급전화 1366	2	3.7
상담소(여성폭력 관련)	9	16.7
가족, 친구	14	25.9
기타	13	24.1
합계	54	100.0

(7) 가정폭력 발생 당시 피해자의 대응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42.6%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냥 당하고 있다'는 경우가 33.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13.0%로 나타났다.

으며, 다음으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녀들을 생각해서’가 1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0〉 경찰서 신고 경험 유무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18	33.3
없다	36	66.7
합계	54	100.0

〈표 4-51〉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배우자(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2	5.6
배우자(가해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6	16.7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5	13.9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6	16.7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5	13.9
자녀들을 생각해서	5	13.9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3	8.3
기타	4	11.1
합계	36	100.0

(9)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조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취한 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인도 하였다’ 50.0%로 가장 많았으나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그냥 돌아갔다’는 응답도 38.9%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5	9.3
없다	49	90.7
합계	54	100.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나 1366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였으며, 다음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5〉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	28	57.1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7	14.3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	4.1
부부(가족) 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3	6.1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	4.1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7	14.3
합계	49	100.0

(12)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경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친구, 친지 등’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은 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8〉 가정폭력상담소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가정폭력 상담소를 몰라서	20	4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6	14.3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5	11.9
부부(기족)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5	11.9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3	7.1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	4.8
기타	1	2.4
합계	42	100.0

(14)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경험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쉼터)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 50.0%, ‘없다’ 50.0%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동반한 경우가 51.9%로 동반하지 않은 경우 48.1% 보다 많았다.

〈표 4-59〉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이용경험	있다	27
	없다	27
	합계	54
자녀동반	예	14
	아니오	13
	합계	27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3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정폭력보호시설(쉼터)을 몰라서’ 1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2〉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

(단위 : 명, %)

구 분	반도	퍼센트
심리적 정서적 지원	22	29.3
법률서비스	16	21.3
의료기관 연계	20	26.7
보호시설(쉼터) 연계	17	22.7
합계	75	100.0

(17) 가정폭력 인지도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는 55.6%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 44.4%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경로는 'TV/라디오의 공익광고'를 통한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3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3〉 가정폭력특별법 인식도

(단위 : 명, %)

구 분	반도	퍼센트
안다	30	55.6
모른다	24	44.4
합계	54	100.0

〈표 4-64〉 가정폭력특별법 인식 경로

(단위 : 명, %)

구 분	반도	퍼센트
TV/라디오의 공익광고	10	33.3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9	30.0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7	23.3
학교/사회교육기관	1	3.3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	3.3

〈표 4-66〉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방법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TV/라디오의 공익광고	39	72.2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5	9.3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3	5.6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3	5.6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2	3.7
신문/잡지	1	1.9
기타	1	1.9
합계	54	100.0

(20) 가정폭력 피해자 필요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독립 지원'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법률적 지원' 20.4%,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지원' 2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7〉 가정폭력 피해자 필요 지원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법률적 지원	11	20.4
의료적 지원	2	3.7
정서적 상담 지원	10	18.5
경제적 독립지원	20	37.0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지원	11	20.4
합계	54	100.0

〈표 4-69〉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교육수준	초졸	9
	중졸	7
	고졸	12
	대졸	5
	합계	33
결혼상태	초혼	20
	재혼	6
	동거	1
	비혼	3
	무응답, 기타	3
이용기관, 시설	합계	33
	상담소	15
	쉼터(보호시설)	7
	장애인 지원 시설	5
	기타	6
합계		100.0

조사대상인 여성 장애인중 장애 등록자는 69.7%, 미등록자는 27.3%였으며 장애 등급은 ‘2급’ 34.8%, ‘3급’ 26.1%, ‘1급’ 17.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청각’ 27.3%, ‘시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가 각 15.2%로 나타났다.

〈표 4-70〉 장애여성의 일반적 현황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등록여부	등록	23
	미등록	9
	비해당	1
	소계	33
장애등급	1급	4
	2급	8

(3) 가정폭력 첫 피해 시기 및 행위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음 폭력을 당한 시기는 ‘20대’ 일 때 48.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일 때 21.2%, ‘40대’ 일 때 12.1%순으로 나타났으며 ‘10대’와 ‘10대 이하’ 일 때도 18.2%로 미성년자일 때 폭력을 경험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가정폭력을 가한 행위자는 ‘배우자’가 84.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4-72〉 가정폭력 첫 피해 시기 및 행위자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첫 피해시기	10대이하	3	9.1
	10대	3	9.1
	20대	16	48.5
	30대	7	21.2
	40대	4	12.1
	합계	33	100.0
첫 가정폭력행위자	아버지	2	6.1
	어머니	1	3.0
	배우자	28	84.8
	시부모	2	6.1
	합계	33	100.0

(4)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유무 및 자녀수

설문조사에 응답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84.8%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폭력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51.5%로 가장 많았다.

〈표 4-73〉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유무 및 자녀수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자녀유무	있다	28	84.8
	없다	5	15.2
	합계	33	100.0

〈표 4-75〉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 요청 기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경찰(112, 지구대)	8	24.2
119	1	3.0
여성긴급전화 1366	4	12.1
상담소(여성폭력 관련)	6	18.2
가족, 친구	7	21.2
기타	7	21.2
합계	33	100.0

(7) 가정폭력 발생 당시 피해자의 대응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그냥 당하고 있었다’는 경우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30.3%,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6〉 가정폭력 발생 당시 피해자의 대응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그냥 당하고 있었다	21	63.6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10	30.3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	6.1
합계	33	100.0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대응중에 그냥 당하고 있는 이유로는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인 경우가 5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서워서’ 23.8% 순으로 나타났다.

(9)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조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취한 조치는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그냥 돌아갔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접수하였다’ 30.8%순으로 나타났다.

〈표 4-79〉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조치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그냥 돌아갔다	7	53.8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 접수하였다	4	30.8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인도하였다	2	15.4
합계	13	100.0

(10) 경찰 신고 후 가정폭력 행위자 행동 변화

경찰신고 후 행위자의 폭력행동의 변화에 대하여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가 5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가 23.1%로 나타나,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한 것에 대해 행위자의 보복행동으로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행위자의 폭력 행동 변화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80〉 경찰 신고 후 가정폭력 행위자 행동 변화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	3	23.1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	7	53.8
폭력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2	15.4
폭력이 중단되었다	1	7.7
합계	13	100.0

〈표 4-8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지원 내용(종복응답)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긴급보호시설안내	8	33.3
경찰 연결	3	12.5
출동 및 이송	3	12.5
전문상담기관 연결	5	20.8
법률기관 연결	3	12.5
의료기관 연결	2	8.3
합계	24	100.0

(13)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경험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한 적이 ‘있다’ 48.5%, 이용한적 ‘없다’ 51.5%로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상담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정폭력상담소를 몰라서’ 6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각 1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4〉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이용경험	있다	16
	없다	17
	합계	33
이용하지 않은 이유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쉼터를 몰라서	11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
	기타	1
	합계	17

(16)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경험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쉼터)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 45.5%, ‘없다’ 54.5%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동반한 경우가 40.0%로 동반하지 않은 경우 60.0%로 보다 약간 적었다.

〈표 4-87〉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이용경험	있다	15	45.5
	없다	18	54.5
	합계	33	100.0
자녀동반	있다	6	40.0
	없다	9	60.0
	합계	15	100.0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정폭력보호시설을 몰라서’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쉼터에 가고 싶지 않아서’ 2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8〉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 分	빈도	퍼센트
가정폭력보호시설(쉼터)를 몰라서	8	44.4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	11.1
주변에 알려지는 두려워서	1	5.6
쉼터에 가고 싶지 않아서	4	22.2
자녀와 같이 가기는 어려워서	2	11.1
배우자(가족)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1	5.6
합계	18	100.0

(19) 가정폭력 관련 인지 정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는 ‘모른다’가 ‘안다’ 보다 높게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1〉 가정폭력 인지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모른다	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8	15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된다	18	15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1	12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16	17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19	14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11	22

(20)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방법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으로는 ‘TV/라디오의 공익광고’ 45.5%, ‘학교/사회교육기관의 교육’ 18.2%,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가 1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2〉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방법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TV/라디오의 공익광고	15	45.5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5	15.2
신문/잡지	1	3.0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2	6.1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6	18.2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2	6.1

이하'인 미성년자일 때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15.4%로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가정폭력을 가한 행위자는 '배우자'가 70.0%, '아버지' 17.6%로, 배우자 다음으로 아버지에 의한 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행위자는 '배우자'가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버지' 7.3%, '시부모' 5.2%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경우는 배우자 다음으로 시부모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 중에는 85.4%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간접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폭력 이후 심리적 상태로는 불안, 우울, 폭력 재발생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 낮은 자존감, 분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는 '그냥당하고 있는 경우'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여성의 경우도 63.6%로 높게 나타났다. '그냥 당하고 있는 이유'로는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거나 무서워서'라고 응답하여 폭력당시 공포감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경우는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간 경우'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정폭력 발생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으로는 '경찰서(112, 지구대)'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찰의 초기대응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가족·친구'가 24.9%였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경우 경찰서와 가족·친구인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경험으로는 40.8%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9.2%는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로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경우는 이 외에도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여성의 경우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취한 조치는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그냥 돌아갔다'는 응답이 전체 4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주여성의 경우 38.9%, 장애여성의 경우 53.8%로 나타나, 경찰의 초기대응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였다. 또한 시·군별로 살펴보았을 때 시단위 지역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심층 인터뷰 결과

본 연구는 충북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의 가정폭력피해자 실태조사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서비스 지원 관련자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였다. 이에 상담소, 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장애인연대의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3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FGI로 추진), 추가적으로 메일로 발송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내용은 가정폭력 지원, 예방사업,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이주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 지원, 연계 등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1) 상담소 부재 지역

충북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가 모두 부재한 지역으로는 단양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진천군이 있으며, 2013년 5월부로 옥천군에 가정폭력상담소가 폐지되면서 총6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여성 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자는 인근지역의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통합한 ‘통합상담소’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었던 ‘가족상담원제’를 다시 부활하여 각 시·군 여성회관 배치하는 것과 지역의 여성폭력관련 전문상담원을 양성하여 상담소가 없는 지역에 여성의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또는 여성회관으로 파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는 곳으로 주간에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 현장상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야간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야간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이들을 일시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청주시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 특히 단양, 영동 등은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시보호시설을 북부권과 남부권에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 의료원을 활용하여 야간에만 의료원에서 폭력피해 여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게 하기보다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을 활용하여 경찰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를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충북에서 적극 시행해보면 좋겠다.” – 인터뷰 내용 中 –

(3) 법률구조 지원 확대

가정폭력은 과거에는 신체적 폭력이 많았으나 최근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지능화 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지원 중 이혼, 양육권 등 법률구조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법률 지원이 가능한 곳은 상담소 및 법률구조공단이 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해 피해자가 지원을 받으면서 2차 심리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법조계 관계자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법률전문상담소의 확대도 필요하다.

충북의 경우 중부권에서는 청주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구조가 활발히 지원되고 있지만, 북부권, 남부권에서는 법률 상담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없다. 따라서 북부권과 남부권에서도 법률전문상담소를 지정하여 피해자가 가까운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족, 새터민 가족 등이 증가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도내 가정폭력 관련 기관으로 상담소 및 시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상담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초기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상담원 양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된다면 여성장애인 지원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청각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한 수화통역자에게 상담에 대한 역량강화를 시켜준다면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면서 상담지원, 연계까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늘 옆에서 지원해 주는 활동보조인에게 무엇보다 상담 분야의 역량강화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 인터뷰 내용 中 –

(2)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여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 기관의 실무자들은 보수와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상담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장시간 교육을 받는 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에 일부상담소에서는 자체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력이 되지 않는 상담소에서는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수요 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 발전센터(공공기관) 등 가까운 교육 기관에서에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에서 추진하는 일방적 교육은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원이 필요로 하는 양방향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인터뷰 내용 中 –

편이다(2009년 지역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설문조사 결과).

지역 기관의 네트워크를 위해 도 단위(광역)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협의회」의 역할과 시·군단위(기초)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그동안 도(광역)에서는 시·군(기초)의 운영 및 정보교류, 홍보 교육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러한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도(광역) 단위에서는 연구, 교육, 홍보, 조사 등의 활발한 활동과 시·군(기초)과의 연계, 사례관리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협의회』 참여되지 못한 기관을 위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도 회의 결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 인터뷰 내용 中 -

(3)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장애인을 위한 예방교육으로는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 가정폭력과 관련한 예방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의 경우 어릴 때부터 부모, 형제들에 의해, 결혼후에는 배우자, 자녀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족구성원들로부터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시키거나 또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커리큘럼과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4)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충북에는 다문화가족을 지원 줄 수 있는 전문적 상담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발생의 우려가 높으며 이주여성 지원시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한 사안이 많아 이들을 지원해 줄 수

(2) 청각장애인을 위한 여성 긴급전화 시설 개선

여성장애인은 긴급한 폭력 상황에 처한 경우 여성긴급전화에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 유형이 많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게 되면 수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로만 이용해야 하는 1366은 이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성긴급전화 1366에도 여성장애인의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여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기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이주여성 가족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1~2가구의 할당이 필요하다.

“현재 주거 내부에 필요물품 및 가재도구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상시 근무하는 상담원이 필요하고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 인터뷰 내용 中 –

피해자 프로그램의 경우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10세 이상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 프로그램의 경우 보호관찰소, 법원, 검찰의 판결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효과적으로 판결전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상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충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연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장에서는 충북의 가정폭력피해자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피해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안은 충북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충북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안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최종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관련 시설 확대

○○ 상담소 부재 지역 통합기능의 상담소 설치

충북도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지원된 가정폭력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상담은 35.7%, 기타상담은 64.3%이다. 여기서 기타상담은 이혼, 부부갈등, 가족 문제등으로, 실제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여성들에게 상담소의 역할과 의미는 크다고 본다.

충북은 현재 여성폭력(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로서 총 2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가정폭력과 관련한 상담소와 보호시설로 가정폭력상담소가 7개소, 보호시설 3개소, 일시보호시설 2개소가 있으며,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상담소 6개소(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포함), 보호시설 2개소가 있으며, 이외에 통합상담소 1개소, 1366센터 1개소, One-Stop지원센터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지원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12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해체율이 증가하면서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충북에는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통역요원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가정폭력 발생 확률이 높으며, 체류, 국적취득, 국제적 이혼 등 복잡한 절차와 사안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통역이 항상 지원되어야 하는 특성과 가족 상담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상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 지원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어의 통역요원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충북은 가정폭력 발생시 주간에는 피해자 기관연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야간의 경우는 연계가 쉽지 않다. 도내에는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이 청주시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단양군에 1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시설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담당자가 배치되어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청주시, 단양군 외의 지역에서는 야간에 긴급하게 보호할 시설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일시보호시설'을 지역별로 설치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북부권과 남부권에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충북도에서 현재 추진중인 「병원·경찰·지자체 업무협약」은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군에 의료원·병원을 활용하도록 한 것인데, 즉 야간에는 의료원(병원)에서 폭력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주간에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입원료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피해자 보호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만약, 지원할 수 없는 긴급피해자는 'SOS솔루션'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상담소 운영 지원 확대

○○ 상담소 운영비 예산 지원 확대

충북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효율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지원 및 예방기관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상담소 운영상의 어려움과 상담원 저임금 등의 고충이 제기되어 왔었다.

실제로 상담소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곳은 충북에서 4개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만 지원되는 기관의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 따라서 상담소 운영비에 대해 국비 뿐만 아니라 충북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에서도 16개 시 도중 충북은 15위로 하위권의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상담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담소도 있어 도내 상담소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유사직종에 비해 급여가 낮고 매년 호봉에 맞는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종사자의 이직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의 안정된 환경과 근무조건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소장, 상담원, 기타 실무자들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다양한 상담 대상(여성 장애인, 이주여성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계속된 상담으로 소진된 상담원에게 ‘쉼(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여성가족부에서도 경찰의 역할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의 「인권 의식 교육」과 「가정폭력 현장대응 업무 수첩」을 제작해 가정폭력 개입시 사법경찰의 역할과 위험성 조사 기준 등을 수록하게 한 바 있지만, 교육이 형식적이고 특히 가정폭력 전문 교육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음으로 신고하여 접하게 되는 경찰관(지구대)은 피해자를 행위자와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1366센터로 연결하여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가정폭력 관련 교육의 확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이해하고 관련 기관 정보를 습득하게 하기 위해 지역의 상담소와 파트너쉽 형태로 함께 실시해 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 가정폭력 행위자 퇴거조치, 제포우선주의 도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현장출입조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민안전종합대책으로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행위자를 일시적으로 유치장에 격리하는 제도 도입 등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전담 경찰관계를 도입, 2015년까지 가정보호시설 24곳, 주거지원시설 196곳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행위자를 일시적으로 유치장에 격리하는 제도는 행위자가 주취상태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주취시에도 유치장에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녀를 동반한 경우가 51.9%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의 주거로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협의회」 확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관 기관간 네트워크를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 기관, 법률 기관, 사회복지 단체 등 위기관리 및 예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의 도와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협의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도단위(광역)와 시·군단위(기초)의 협의회 역할이 중복되거나 연계활동이 부족하다. 사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협의회」는 상담기관, 의료, 교육, 경찰, 전문가, 여성연대 등 다양한 기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활용되면 좋을 것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도(광역) 단위에서는 연구, 교육, 홍보, 조사 등의 활발한 활동과 시·군(기초)과 연계한 사례 관리, 워크숍 등을 통한 시군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역간의 정보를 교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SOS솔루션'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긴급 지원 사례가 발생하면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협의회」를 통해 긴급간담회가 구성되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도내 관련기관(상담소 등)을 홍보하는 공동리플릿을 제작하여 각 기관에 홍보하고, 특히 여성장애인, 이주여성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더불어 충북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SOS솔루션'과 협조 체계를 이뤄야 할 것이다.

5. 여성폭력 관련 법률 정비 및 계획 수립

○○ 「여성폭력피해 연합 및 통계 자료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충북은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로써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제17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위한 시책 개발의 필요성만을

참 고 문 헌

- 박선영외(2007),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변화순외(2009),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연계 방안 연구」, 여성 가족부
- 서혜정(2011),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송수진·이은주(2009), 「충청북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신상숙(2007),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화 과정의 차이」 한국여성학회
- 우복남·허민숙(200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피해자 욕구조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이미정외(2008),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상준(2006), 「청소년 가정폭력 노출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 이성은·고은정(2010), 「서울시 여성폭력 예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 임현희·강세영(2010) 「대구지역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
- 정춘숙(2013),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방안」, 경찰대학 치안정책학술세미나
- 여성가족부(2008),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2012), 「1366 충북센터 사업보고서」,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충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연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부록 : 설문지

충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정성껏 응답해 주신 내용은 충북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책임연구자 : 송수진

설문 지역

- | | | | |
|-------|-------|-------|-------|
| ① 청주시 | ② 충주시 | ③ 제천시 | ④ 청원군 |
| ⑤ 보은군 | ⑥ 영동군 | ⑦ 진천군 | ⑧ 옥천군 |
| ⑨ 괴산군 | ⑩ 증평군 | ⑪ 음성군 | ⑫ 단양군 |

* 해당되는 곳에 V표나 내용을 기재해주십시오.

민 서비스 지원 사항

1	귀하는 가족들(배우자)로 부터 받은 폭력은 무엇입니까? (모두체크)	① 언어적폭력 ② 정신적폭력 ③ 신체적폭력 ④ 성적학대 ⑤ 방임 및 유기 ⑥ 경제적폭력 ⑦ 기타 _____
2	귀하는 언제 가정폭력을 처음 당했습니까?	① 10대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이상
3	이번 가정폭력 가해자는 누 구인가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배우자 ④ 형제, 자매 ⑤ 자녀 ⑥ 친인척 ⑦ 시부모 ⑧ 기타 _____
4	처음 귀하에게 가정폭력을 가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배우자 ④ 형제, 자매 ⑤ 자녀 ⑥ 친인척 ⑦ 시부모 ⑧ 기타 _____
5	귀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_____ 명) ② 없다

6. 가정 폭력 이후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모두 표시)

- | | |
|--|--|
| ①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③ 폭력이 다시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
⑤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⑦ 기타 () | ② 불안하고 우울하다
④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⑥ 죽고 싶다는 생각 |
|--|--|

7. 가정폭력 발생 후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 | | |
|---|---------------------------------|
| ① 경찰(112, 자구대)
③ 여성긴급전화 1366
⑤ 가족, 친구 | ② 119
④ 상담소(여성폭력 관련)
⑥ 기타 |
|---|---------------------------------|

11. 귀하는 폭력 경험 후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11-1 작성)

→ 11-1.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
- ②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③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④ 부부(가족) 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 ⑤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 ⑥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⑦ 기타 ()

② 예
(11-2, 11-3 작성)

→ 11-2.
여성긴급전화 1366을 알게 된 경위

- ① 매스컴
- ② 친구, 친지 등
- ③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 ④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 ⑤ 인터넷
- ⑥ 광고문(책자, 길거리, 버스, 전철 등)
- ⑦ 기타 ()

11-3.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
(모두 표시)

- ① 긴급보호나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 ② 경찰에 연결(경찰수사 관련)
- ③ 긴급현장 출동 및 이송
- ④ 전문상담기관 연결(가정폭력 전문 상담소 등)
- ⑤ 법률기관 연결
(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
- ⑥ 의료기관 연결(응급치료, 법적증거확보)
- ⑦ 기타 ()

12. 귀하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12-1 작성)

→ 12-1.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쉼터를 몰라서
- ②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③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④ 부부(가족)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 ⑤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 ⑥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⑦ 기타 ()

② 예
(12-2~5 작성)

→ 12-2. 상담소를 알게 된 경위

- ① 매스컴
- ② 친구, 친지 등
- ③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 ④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 ⑤ 인터넷
- ⑥ 광고문(길거리, 버스, 전철 등)
- ⑦ 기타 ()

가정폭력관련 법 인식도

14.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가정폭력이 아니다	가정폭력 이다
1)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1	2
2)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1	2
3)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1	2
4)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1	2
5)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	2

15. 가정폭력 방지법과 가정폭력 특례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5-1 작성)

→ 15-1. 귀하께서는 가정폭력관련법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 | |
|-----------------------|---------------|
| ① TV/라디오의 공익광고 | ②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
| ③ 버스/지하철 광고 | ④ 신문/잡지 |
| ⑤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 ⑥ 학교/사회교육기관 |
| ⑦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 ⑧ 반상회보/구청소식지 |
| ⑨ 기타 () | |

16. 다음은 가정폭력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안다’, 모르고 계시면 ‘모른다’로 각 문항별로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모른다	안다
1)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2
2)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된다	1	2
3)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	2
4)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2
5)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1	2
6)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1	2

**연구보고서 2013-2
충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연구**

2013년 07월 05일 인쇄
2013년 07월 08일 발행

발행인_ 유영경
발행처_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360-18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공원로 27(지북동 355-17)
tel. 043-220-6471~2 / fax. 043-220-6479
<http://woman.cb21.net>

발행등록번호_ 73-6430302-000024-01

ISBN_ 978-89-92023-25-2-23330

인쇄처_ 디자인세상 tel. 043)224-4235

